

의안번호	제239호
의결연월일	2024. 1. 12

-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. 3. 장순관 의원 외 7인
- 회 부 일 자 : 2024. 1. 5. 행정복지위원회
- 상 정 일 자 : 2024. 1. 12.

제297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대표 발의자 : 장순관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군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기준, 지원범위, 지원신청·선정에 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지원제외 및 지원회수에 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범진)

-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에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, 독거노인에게 보행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